

2018학년도 3월 신입학
재외국민(새터민) 모집안내

수시모집
정시모집 「가」, 「다」 군



성결대학교
SUNGKYUL UNIVERSITY

1. 모집단위 및 인원

구분	대학	학부 (과)	모집인원	
주간	신학대학	신학부(신학/기독교교육/선교학 전공)	24 (미지정)	
	인문대학	국어국문학과		
		영어영문학과		
		중어중문학과		
	사회과학대학	국제개발협력학부		
		사회복지학과		
		경영학부		
		동아시아물류학부(유통물류학/동아시아학 전공)		
		행정학부		
	공과대학	컴퓨터공학부		
		정보통신공학부		
		미디어소프트웨어학부		
		산업경영공학부		
		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		
	예술대학	음악학부(성악/피아노)		
		연극영화학부(연기예술/영화영상 전공)		
		뷰티디자인학부		
		공연음악예술학부(현대실용음악/현대교회음악 전공)		
	야간	인문대학		영어영문학과
		사회과학대학		관광개발학부(관광개발/부동산 전공)
사회복지학과				
경영학부				
행정학부				

- ※ 입학정원의 2%, 학부(과) 모집단위별로 10%의 인원을 모집합니다.
- ※ 수시에서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.
- ※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,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은 입학정원 제한이 없습니다.

2. 전형일정

구 분		일 시	장 소	비 고
수시모집	원서접수	2017. 7. 1.(토) 10:00 - 7. 7.(금) 16:00까지	입학관리과 (인터넷, 방문접수)	입학지원서는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
	(추가)서류접수	2017. 7. 1.(토) 10:00 - 7. 21.(금) 16:00까지	입학관리과 (방문 또는 우편)	
	합격자발표	2017. 11. 3.(금) 전후	본교 홈페이지	
	최초등록	2017. 12. 18.(월) - 12. 21.(목)	기업은행 전국지점	
	최종등록	2018. 1. 31.(수) - 2. 2.(금)		
정시모집	원서접수	2017. 12. 30.(토) 10:00 - 2018. 1. 2.(화) 16:00까지	입학관리과 (인터넷, 방문접수)	입학지원서는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
	(추가)서류접수	2017. 12. 30.(토) 10:00 - 2018. 1. 5.(금) 16:00까지	입학관리과 (방문 또는 우편)	
	합격자발표	2018. 1. 19.(금)	본교 홈페이지	
	등록	2018. 1. 31.(수) - 2. 2.(금)	기업은행 전국지점	

※ 입시원서 및 제반 서류는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
※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.

3. 지원자격

가. 기본 학력요건

- 초·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(외국소재 고교 졸업자,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)

나. 재학기간의 기준

-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
- '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'의 일반적 의미는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(2년 전체)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는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함
-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인정함

다.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

(1) 영주교포자녀

-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,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 과정을 포함한 중·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 (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
(2) 해외근무자의 자녀

-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·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 (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자

①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

-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

② 해외상사직원의 자녀

-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(또는 해외사무소)의 임직원
-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(또는 해외사무소)의 임직원

※ 설치인증,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·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외국환은행(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, 금융기관 포함)의 임직원
- 정부파견의사, 언론기관특파원

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

- 외국정부 :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(단, 기타 국가기관, 지방정부, 국영기업체는 제외)
- 국제기구 : 정부 간의 국제조약·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(단,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)

(3) 기타 재외국민 자녀

-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서 학력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거주(근무)했거나 거주(근무)하고 귀국한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또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·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 (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·고교 3년 이상)

① 자영업자의 자녀

② 외국현지회사근무자의 자녀

③ 선교사의 자녀

(4)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

(5) 전 교육과정 이수자

-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·중등 교육과정(12년이상)을 이수한 내국인

※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

- 국내 소재(외국군 기지 포함)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국외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을 이수한 자는 제외합니다.
- 초·중·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[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,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,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.]
- 국외 학교 간 전·편입학에 의한 월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외국의 학교에 전·편입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.
-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으로 인정합니다.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1항 제9호)
-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.

학년제	인정여부 및 조건	비고
10학년 이하	미인정	단,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초·중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는 인정함
11학년제	초·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	
12학년제		
13학년이상	10학년~12학년 또는 11학년~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	

라.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

- (1) 지원 대상자는 본 대학 특례입학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.
- (2)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지 못한 지원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.
- (3) 위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학부 지원자는 담임목사(교역자)의 세례교인 증명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.

(4)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(단위 : 연)

구분	지원자격	학생			보호자			배우자	
		재학	거주	체류	근무	거주	체류	거주	체류
연속	영주권자	2	2	1.5		2	1	2	1
	해외근무자의 자녀	2	2	1.5	2	2	1		
	기타 재외국민의 자녀	2	2	1.5	2	2	1		
비연속	영주권자	3	3	2		3	1.5	3	1.5
	해외근무자의 자녀	3	3	2	3	3	1.5		
	기타 재외국민의 자녀	3	3	2	3	3	1.5		

- ※ 재학기간 :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 해석 가능
예) 2학기제 : 중고과정 연속 4학기, 3학기제(쿼터제) : 중고과정 연속 6학기(9학기)
- ※ 해외거주기간 :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
- ※ 해외체류기간 :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
- ※ 해외영주기간 :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

마. 전형방법

- (1) 서류평가 100%로 학생을 선발합니다.
- (2) 지원자의 학력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.

바. 지원절차 및 전형과정

(1) 지원절차

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 → 증빙서류 제출 →
자격요건 및 서류심사(본 대학교) → 합격자 발표 → 등록

(2) 전형과정

- ① 본 대학은 지원자의 지원 서류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합니다.
- ②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까지 본 대학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③ 본 대학의 지원자는 서류심사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은 후,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

사. 제출서류

(1) 일반 준수사항

- ①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, 부득이한 경우 발급기관(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)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② 한국어로 발급되지 아니한(외국에서 발행된)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 인증을 받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에서 '재외교육기관 확인서' 또는 '영사확인'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③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④ 부모의 이혼, 사망, 동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⑤ **고교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2018년 2월 23일(금)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- ⑥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⑦ 모든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(본교 양식)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아. 유의사항

- (1)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합니다.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취소 요청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(2) 이중국적 보유자는 내국인으로 보아 특례입학을 불허합니다.
- (3)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(4) 국내 연락처와 국내 주소지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.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성결대학교 입학관리과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,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합니다.
- (5) 자기소개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.
- (6)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 편람과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(7)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(8)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
 - ① 2018학년도 3월 신입학 수시 재외국민 전형에 **최종 합격한 자**는 아래의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할 경우 모든 합격이 취소됩니다.
 - 2018학년도 정시모집, 추가모집 및 2018학년도 9월 입학 수시모집(재외국민 전형 포함)
 - ② 수시모집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포함)에서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(예치금 납부)하여야 하며, 이중 등록 시에는 등록된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(9) 서류의 위조나 변조, 구비서류 미비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,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.

자. 전형료

(1) 입시 전형료 : 40,000원

(2) 전형료 환불규정

- ① 지원자격 미달자, 단순 변심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단 아래의 사유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.
 - 응시생의 착오로 인한 입학전형료 과납의 경우 : 과납한 금액 전액
 -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입학전형료 전액
 -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입학전형료 전액
 - 질병(사고)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입학전형료 전액 (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본교가 인정한 자에 한함)
 - 입학 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 관련 손실·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생에게 반환합니다 (단, 입학전형료 반환금액이 금융기관 전산망 사용료 미만일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).

차. 등록금 납부안내

- (1) 수시모집 합격생은 수시 예치금 등록기간(2017. 12. 18.(월) - 12. 21.(목))에 등록확인예치금 (300,000원)을 우선 납부하고, 등록금 확정 후 차액은 신입생 등록기간 (2018. 1. 31.(수) - 2. 2.(금))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.
- (2) 정시모집 합격생은 신입생 등록기간(2018. 1. 31.(수) - 2. 2.(금))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.

카. 입학 안내

- 담당부서 : 성결대학교 입학관리과
- 연 락 처 : 031-467-8288 (8965, 8208)
- 주 소 : (14097)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